



2023. 1. 5.

수신인: 윤민옥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6-30 2층 204-2호
(전화: 010-7141-4186)

발신인: 법무법인 원스

담당변호사 신기현
서울 강남구 삼성로 566, 2층(삼성동, 빌딩엠)
(전화: 02-556-6800, 팩스: 02-556-6809)

발신위임인: 최예은(노즐리플랜)

서울시 송파구 삼전로 53 프레피유1차 2층 아이비코워크 5호실

제 목: 저작권 침해 주장 및 합의금 요구에 대한 답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2022. 12. 22.경부터 최근까지 발신위임인(이하 “의뢰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 및 요구를 하였습니다.

- ① 의뢰인이 대행사로서 작성한 글들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형사 고소 대상임
- ② 의뢰인이 2023. 1. 3.까지 합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고소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음
- ③ 만약 2023. 1. 3.까지 합의금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후 날짜에는 지급하여야 하는 합의금이 올라갈 것임(1. 4.은 150만원, 1.5.은 200만원, 1. 5. 이후에는 변호사 비용까지 지급). 다른 블로거는 소송 중간에 500만원으로 합의한 사례도 있음

이에 발신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귀하의 위 주장 및 요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3. 우선, 귀하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의뢰인 사업체)이 작성한 글들은 법률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은 저작권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인데, 대법원 역시 위 원칙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결국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29. 자 97마330 결정).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저작물에 기재된 학술적, 이론적 내용,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를 후속 저작물이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 이외의 창작적 표현 형식을 이용한 것이 아닌 이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시하고 있는 의뢰인의 글들은 귀하의 글들과 비교하여 소재 내지 주제(아이디어) 채택에 있어서 유사한 점은 있으나, 그 소재 내지 주제를 표현하는 독창적인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의뢰인의 글들은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 귀하의 표현과 다른 의뢰인만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대원칙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를 때 도저히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한편 귀하는 의뢰인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어 ‘합의시 고소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 합의금 100만원을 지급하라’, ‘합의가 늦어지면 수용할 수 있는 합의금을 점점 늘리겠다’는 등의 요구를 하였는데, 이는 형사상 공갈(형법 제350조)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합의금을 주지 아니하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고지를 하여 공갈 또는 공갈미수의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례는 무수히 많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노 454 판결 등). 따라서 귀하가 본 내용증명을 수신하고도 위와 같은 요구를 지속한다면, 이는 고의 내지 해의(害意)에 기한 공갈 행위로 보아 의뢰인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5. 의뢰인은 귀하가 본 사안과 관련하여 겪었을 심리적 고통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동안 귀하의 주장에 응답하여 도의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였으며, 의뢰인 스스로 관련 글을 삭제하거나, 귀하가 네이버 등에 취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귀하가 요청한다면 추가적 사과 및 사과 관련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잘못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에 관련한 귀하의 주장이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고, 만약 귀하가 고소 등 사법 절차를 제기한다면 본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귀하의 주장을 모두 배척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오히려 귀하가 고소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을 들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도 있습니다.

귀하는 본 내용증명을 수신한 후 2023. 1. 11.까지 발신인 또는 의뢰인에 본 내용증명에 대한 의견이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발신인 또는 의뢰인이 해당 일자까지 답변을 수신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귀하가 본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끝.

*

*

*

본 서면의 내용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본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신기현 전화: 02-556-6800, 이메일: kihyun.shin@winslaw.co.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신 기 현

